

「IBK 모임통장」 상품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저축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 상품 개요

- **상 품 명** : 「IBK 모임통장」
- **상품개요** : 자유롭게 입금 및 출금이 가능한 예금상품 (저축예금)
모임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개설하는 예금상품

2 |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 19세 이상의 개인 ※ 20영업일 이내 입출금계좌 개설 시, 거래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	• 비대면 전용 상품(SB톡톡+앱)	
가입해지	• 비대면 전용 상품(SB톡톡+앱), 영업점 내방(수수료 발생) • 모바일뱅킹(SB톡톡+)앱을 통한 해지 시 ※ 모임장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예금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1. 이 예금의 잔액이 없는 경우 2. 이 예금과 연결된 모임에 모임원이 없는 경우 3. 모임통장 체크카드를 발급한 경우 해당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해지한 경우 - 단, 사망, 압류 등 사유 발생 시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및기간	• 제한없음	
예금자 보호여부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 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가입한도	• (모임장) 신청 가능 수 : 고객당 최대 5개 계좌 개설 가능 • (모임원) 참여 가능 수 : 고객당 최대 5개 계좌 가입 가능 ※ 모임통장서비스 1개당 모임멤버는 최대 100명까지 참여 가능	
제한 사항	• 양도에 의한 명의변경, 마이너스통장 등의 한도 대출 또는 대출 이자 원리금 납부 계좌로 활용 불가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질권 설정 : 불가능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이자지급시기	• 매분기 마지막 월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익일에 원가 •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 또는 결산기준일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매일 잔액을 기준으로 영업점에 게시한 구간별 이율을 적용	

구 분	내 용								
이자소득의 귀속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원천징수는 모임장에게 귀속되며 금융소득 납세의무는 모임장에게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금리] 이 예금은 금액 구간 및 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 - 구간 및 금리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고시된 금리 적용 - 금액 구간별 차등이율 적용 (최저 연 0.10% ~ 최고 연 2.50%) (기준일 : 2025.10.29. 세전 / 단위 : %) <table> <tr> <th>금액 구간</th><th>금 리</th></tr> <tr> <td>1억원 이하</td><td>연 2.50</td></tr> <tr> <td>10억원 이하</td><td>연 1.50</td></tr> <tr> <td>10억원 초과</td><td>연 0.10</td></tr> </table>	금액 구간	금 리	1억원 이하	연 2.50	10억원 이하	연 1.50	10억원 초과	연 0.10
금액 구간	금 리								
1억원 이하	연 2.50								
10억원 이하	연 1.50								
10억원 초과	연 0.10								
위법계약 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자료열람 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 및 거래절차	"모임장"이라 함은 모임통장을 최초로 개설한 자로, 모임장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모임원"이라 함은 모임장으로부터 모임 초대를 받고 모임통장서비스 참여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모임원은 모임통장의 거래내역, 잔액 등의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모임통장에서 이체 및 출금거래와 모임통장을 결제계좌로 한 모임카드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용자"라 함은 모임장으로부터 모임 초대를 받고 모임통장서비스 참여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나가기"라 함은 모임통장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는 모임원이 본인의 모임통장서비스를 나가는 것(해지 아님)을 말합니다. "내보내기"라 함은 모임장이 자신의 모임통장서비스에서 모임원을 내보내는 경우입니다. 다만 시간 관계없이 해당 모임통장서비스에 모임원 재초대 및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모임종료하기"라 함은 모임장이 자신의 모임통장서비스를 해지하는 것입니다. 단, 참여 중인 모임원이 없고 해당 모임통장계좌에 잔액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 모임통장계좌에 관한 사고신고, 해지 등에 관한 기능은 모임장만 가능합니다. 모임원은 불가능합니다.								

구 분	내 용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이후 가입(자동재예치)분부터 「직전3개년도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3 |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22-79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ibksb.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전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서명(날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IBK저축은행과 예금거래를 함에 있어 **상품설명서**를 제공받았으며,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예금거래의 **주요내용, 거래조건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고객명 :

(서명/인)